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10. 20 선고 2022가단9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. 8. 3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58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정하경

별지